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12. 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92회 제2차정례회 제4차위원회 (2002. 12.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조 한 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0. 5. 15 조례 제458호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너무 많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와 구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20세 이상 7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지난 2000. 5. 15.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 연서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감사청구 연서주민 수를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취지에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완화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2. 5. 23.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있나?
- 답변요지(조한영 감사담당관) : 우리구 사례는 없으나 서울시에서 타구 소관사항으로 3건 있음.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연서 주민은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 답변요지(조한영 감사담당관) : 되어 있어야 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11. 2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0. 5. 15 조례 제458호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너무 많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구와 구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20세 이상 7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3.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2002. 3. 25 법률 제6669호) 제13조의4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79호)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2. 10. 21 ~ 11. 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2. 11. 2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00인 이상” 을 “200인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 200인 이상-----.</p>